



원자력손해배상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이 헌 규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97년 10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 원자력 안전 회의」에서 원자력 손해 배상 제도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각국 대표들간에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아시아 각국의 관련 제도에 관한 주제 발표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 등의 국제 기구와 미국 등 읍서버 참여국들의 입장과 의견 개진이 있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원자력의 이용 개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효과적인 국가 손해 배상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앞으로 관련 정책 및 제도 확립을 위해 회원국간 정보 교환 등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 협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도록 회원국의 국내 규제 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인접국인 아시아 국가들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 협의체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필자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여하여 각국의 진지한 의견 교환과 국제 기구의 노력 등을 지켜보면서, 우리 나라도 이제는 원전 10대 이용국에 걸맞는 손해 배상 제도 마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느꼈다.

손해 배상 제도는 2차 대전 후 미국에서부터 출발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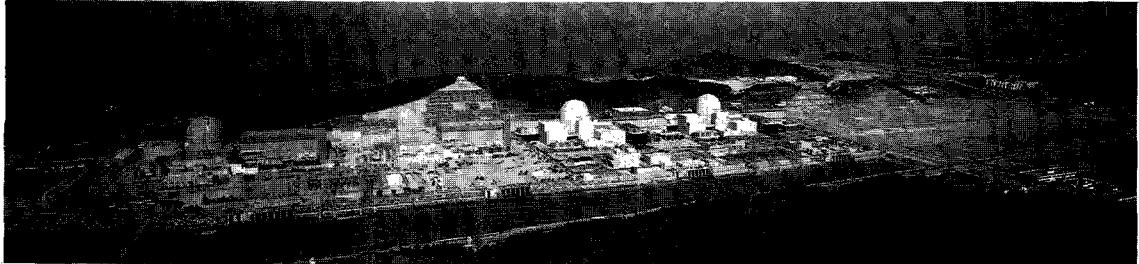
그후 68년 OECD/NEA를 중심으로 「파리 협약(원자력 분야의 제3자 책임에 관한 협약)」이 발효되었고, 77년 IAEA를 중심으로 「비엔나 협약(원자력 손해의 민사 책임에 관한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점차 국제적 규범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파리 협약이 서유럽 14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의 성격이 짙고, 이보다 훨씬 보편성이 있는 비엔나 협약의 경우에는 미국·일본 등 주요 원전 보유국들이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 있는 국제 협약으로 정착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 이후 각국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지난 수년간 IAEA의 노력으로 금년 9월 원자력 손해의 범위 확장, 배상 책임의 조정, 배상 한도액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비엔나 협약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또한 국제적 재원 마련을 위한 「보증 기금 협약」이 채택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IAEA는 현재 회원국들의 서명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개정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는 원자력 시설 보유국은 원자력 사고에 대비하여 최소 3억 SDR(Special Drawing Rights)(약 3,500억원) 이상을 손해 배상 조치액으로 확보(공공 기금으로 조치액의 일부를 확보하는 경우도 포함)해야만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양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



“

최근의 국제 추이를 감안할 때 정부, 원자력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협력하여 원자력 손해 배상 조치액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국경을 넘는 원자력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체제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도출해 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도 향후 국제 협약의 가입 문제뿐 아니라 이러한 국제 규범의 틀 내에서 지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

지만, 원자력 이용 초기인 69년에 원자력 손해 배상법을 제정하였고, 75년에는 「원자력 손해 배상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근거 마련,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배상 조치 초과분에 대한 정부 원조의 근거 설정 등 기본적인 제도의 골격은 갖추고 있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허가 이전에 초기당 60억원의 책임 보험 계약을 보험 회사와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원전 연료(주) 등은 연구용 원자로와 핵연료 가공 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60억원에 이르기까지 각 시설별로 정해진 액수에 해당하는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자와 보상 계획을 체결하고 국회의 의결을 받아 사고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 예산 총액에 반영하고 있다.

97년 11월 현재 총 계약 금액은 약 800억원 수준이

다.

최근의 국제 추이를 감안할 때 정부, 원자력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협력하여 원자력 손해 배상 조치액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국경을 넘는 원자력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체제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도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원자력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한·일·중 등 동북아 지역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도 향후 국제 협약의 가입 문제뿐 아니라 이러한 국제 규범의 틀 내에서 지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앞으로 주변국들의 국제 협약 가입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내 원자력 사업자의 부담 증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가입 시기 결정 문제 및 국내 관련 제도의 보강 등 구체적 개선 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